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7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71)

2. 제안이유

-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며, 조례의 형식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벗어나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(법제처 권고)

3. 주요내용

-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 589㎡를 공덕동(법정동)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.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-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 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

5. 검토보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며, 조례의 형식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벗어나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 589m²를 공덕동(법정동)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명칭 및 구역확정 변경 연혁표를 보면 12번째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발생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고,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